



관악구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「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집합금지명령」 안내

1. 관련 문서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2020.08.18.)
- `20.8.18. 17:00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1150(2020.08.18.)

2.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교회, 카페, 병원 등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.

※ **수도권 확진자 수 : (8.15) 145명 → (8.16) 245명 → (8.17) 163명 → (8.18) 201명**

3. 8.18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,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.

4. 이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, 관내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MICE 행사(전시·박람회, 학술대회)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명령 내용을 안내하오니,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상세내용

가. 적용기간 : 2020. 8. 19.(수) 00:00 ~ 별도 해제 시

나. 조치내용 :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행사 집합금지

< 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(중앙사고수습본부, 8.18) >

▲ (행사) **전시회, 박람회**, 설명회, 공청회, **학술대회**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 등

5. 위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위는 금지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.

- 붙임 1. [공문]서울·인천·경기 지역의 집합·모임·행사 집합금지 조치(중앙사고수습본부, 8.18) 1부.
 2.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·모임·행사 집합금지 조치(중앙사고수습본부, 8.18) 1부.
 3.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(중앙사고수습본부, 8.18) 1부.
 4. 국무총리 담화문(8.18) 1부. 끝.

관 약 구 청



서울대학교총장, MICE 행사 개최 기관 대표자

★주무관

오지숙

문화관광팀장

윤승현

문화관광체육
과장

전결 2020.8.19.

이영득

협조자

시행 문화관광체육과-25973 ((2020.8.19.)) 접수

()

우 0883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, 1동 4층(봉천동) /

전화 02-879-5604 전송 02-879-7820 / 201401302@ga.go.kr

/ 공개